

## [사]한국지식재산학회 보도자료

문의 : 한국지식재산학회 간사 최동영

전화: 02-2220-0999, 2826, 팩스 : 02-2292-5359

홈페이지 <http://www.kipla.or.kr> 이메일 [ccnlaw@ccnlaw.or.kr](mailto:ccnlaw@ccnlaw.or.kr)

- 한국지식재산학회 ·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공동세미나
- ICT 분야 표준특허 분쟁 현황 및 각국 법원의 판결 동향
  -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및 IP Hub Court 관련 현안과 전망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선희)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이상홍)와 2015년 12월 16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ICT 분야 표준특허 분쟁과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에 대해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선희 회장의 개회사,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관의 축사, 김홍남 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며,

제1세션에서 최민서 변리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활용팀장)가 “ICT 분야 표준특허 분쟁현황 및 각국 법원의 판결 동향”을 발표하고, 김광준 변호사(Intellectual Discovery 대표)의 진행아래 박충수 변호사(Sol IP 대표)와 이수진 박사(삼성전자 IP법무팀 수석)가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 한규현 수석부장관사(특허법원)가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및 IP Hub Court 관련 현안과 전망”을 발표하고, 윤선희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아래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안원모 교수(홍익대 법과대학)가 토론한다.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모든 산업과 기업의 인프라로서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이 된다. 지난 10여년간 ICT 글로벌 기업들은 ICT 관련 특허경쟁을 치열히 다투어왔으며, 이 중심에는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분쟁이 존재한다.

제1세션 발표자인 최민서 변리사는 이러한 ICT 글로벌 기업들 간의 특허분쟁인 애플 대 모토로라 판결, 삼성 대 애플 판결, 마이크로 소프트 대 모토로라 판결 등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의 해석과 표준특허에 기초한

금지처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이 프랜드 조항은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다. 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사에 제기한 통신표준에 대한 특허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내세워 주목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에 대해 표준화된 필수 특허기술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에 따라 승패 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11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5개),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의 1심은 특허심판원,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침해 여부 및 배상금액 등을 다루는 침해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1심은 전국의 지방법원·지원, 2심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특허소송의 관할이 분산되어 있어,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특허관련 소송에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제2세션 발표자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제도에 대한 소개와 특허법원의 준비 현황, 관련 현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고, 특허법원내 국제재판부 설치를 통한 IP Hub Court 추진과 관련하여 세계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외국어 변론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공동세미나는 2015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르네상스호텔(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4층 유니버설 룸)에서 개최되며,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참가희망자는 학회사무국([ccnlaw@ccnlaw.or.kr](mailto:ccnlaw@ccnlaw.or.kr))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한국지식재산학회장 윤선희**



『2015년 한국지식재산학회·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공동세미나  
**참가신청서**

◎ 참가자				
소속				
참가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	
	핸드폰		이메일	
	주소			

◎ 실무 연락처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전화	핸드폰	

상기와 같이 『2015년 한국지식재산학회·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공동세미나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5. 12. .

신청인: (인/서명)

※제출하신 정보는 학술대회 신청확인용으로 사용되며, 학술대회 후 즉시 폐기됩니다.  
 학회 회원이신 경우 학회 정보 갱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한국지식재산학회 [ccnlaw@ccnlaw.or.kr](mailto:ccnlaw@ccnlaw.or.kr)

사무국 전화번호 : 02-2220-0999, 2826, 010-3312-7207